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한국 내 외국기업에 관한 특별법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5 년 1월 26일

청 원 인

성 명 : 서 유진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서 유진
건명	한국 내 외국 기업에 관한 특별법
소개년월일	2015년 1월 26일

소개의견

청원인 서 유진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원입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수출 증대 및 교역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통상협력 증진,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시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2015년 1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한국 내 외국 기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의 주 내용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 내 외국기업의 일방적인 회사철수 통보와 무책임한 대응방식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에 근무 하던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미지 역시 실추되었다. 우리는 외국계 기업의 일방적인 철수통보를 예방 하고 아울러 국내 해외기업들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입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내 외국계 기업들 관련 특별법>

- ① 외국 기업이 한국 지사를 설립 한 후 철수를 결정 할 시에는 국가에 공식적인 보고를 한다.
 1. 보고는 구두형식이 아닌 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보고서 내용에 철수를 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와 근로자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사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 ② 해당 법률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총괄아래 심의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법안에 대해서 심의위원단을 구성한다.
 2. 심의 위원단은 최대 5인으로 제한한다.
 3. 심의 위원단 구성원은 해당 기업과의 연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한국 내 외국 기업들이 철수를 할 때 충분한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 기존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그리고 미약한 대응 방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인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회사 철수를 통보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 같은 상황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1997년 야후 코리아가 창립된 후 2004년에 야후 본사에서 한국지사철수를 통보했을 당시에 6개월 어치의 위로금을 지급한 후 2개월 뒤 근로자들을 전면 퇴직시켰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을 철수한 외국계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월 그루폰 코리아는 한국지사를 폐쇄함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서비스를 중단하며 고용승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7월 HSBC는 한국 소매금융 철수를 발표하고 국내지점 10곳을 폐쇄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모토로라모빌리티코리아 역시 한국 소매금융 철수를 발표하고 2013년 2월부터 서비스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같이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지사 철폐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위법사항이 없을 시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열 회사에 관한 특별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회사 철수에 대해서 외국기업의 신중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약한 대응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주요골자

외국 기업이 한국 지사를 설립 한 후 철수를 결정 할 시에는 국가에 공식적인 보고를 한다. 보고는 구두형식이 아닌 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보고서 내용에는 필수적으로 철수하는 명백한 이유와 근로자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사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또한 해당 법률에 대해서는 지식 경제 위원회의 총괄아래에서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제 위원회는 본 법안에 대해서 심의의 원단을 구성한다.

< 한국 내 외국 기업 관련 법률 >

- ① 외국 기업이 한국 지사를 설립 한 후 철수를 결정 할 시에는 국가에 공식적인 보고를 한다.
 1. 보고는 구두형식이 아닌 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보고서 내용에 철수를 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와 근로자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사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② 해당 법률에 대해서는 지식경제위원회의 총괄아래 심의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법안에 대해서 심의위원단을 구성한다.

2. 심의 위원단은 최대 5인으로 제한한다.

3. 심의 위원단 구성원은 해당 기업과의 연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